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7,444,028	11,023,321
일반회계	341,998,704	10,259,961
특별회계	25,445,324	763,360
기타특별회계	25,445,324	763,360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240,577	67,217
섬진강댐특별회계	6,850,000	205,5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66,000	28,98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3,317,592	99,5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3,449	12,703
기반시설특별회계	83,447	2,5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34,161	316,0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0,098	30,903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67,257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